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[ ] 석유정제업 [ ] 개 시
[ ] 석유수출입업 [ ] 휴 업 신고서
[ ] 국제석유거래업 [ ] 폐 업
[ ] 석유판매업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합니다)	
	주된 영업소의 소재지	

사업의 개시	년 월 일 사업개시	
사업의 휴업·폐업	기간	
	사유	
사업의 재개시	년 월 일 사업 재개시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시·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(사업을 개시하는 경우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·제출	→	접 수	→	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	→	결 재	→	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
신고인		한국석유관리원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		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